

[공동연구개발분쟁]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공동개발 분쟁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

8.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



1. 공동개발계약 및 분쟁 경위

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1. 11. 29. 상호개발계약 체결 + 2012. 4. 23. 계약해지

제1조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갑(피고 B), 을(원고)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LED전구를 상호 개발하여 공동으로 제조, 판매에 대한 갑과 을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계약당사자의 의무)

- ① 갑은 LED와 Driver part를 개발공급하며
- ② 을은 자동차 전구의 기구물에 대한 개발 및 생산을 담당
- ③ 각사별 협의된 업무분장을 통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판매
- ④ 국내 판매는 갑이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해외 판매를 을이 우선적으로 판매한다. 단 중

계약관계 파탄 후 원고 디자인등록 3건 + 피고 디자인 등록 1건 + 피고 제품 생산 및

판매 +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+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
청구

2. 피고의 제품에 관한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

원고의 디자인등록 유효 + 피고제품과 디자인 유사 + 등록디자인권 침해 인정

3.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피고의 디자인 사용권한 여부

피고 주장요지: 아래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2항에 의해 계약해지 전 개발된 각 디
자인에 대해 피고도 사용할 권리가 있음

제5조(개발품 및 개발효과의 귀속과 판권)

- ①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에 의하여 개발된 각각의 부분품 및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각자 소유하며 모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.
- ② 결과물에 의하여 제작되는 모든 권리 및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된 개발효과 및 권리는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판매를 늘린다.

4. 법원의 판단

위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1항에서 “각각의 부분품 및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각자 소유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, 제2항의 “양사가 공동으로 소유”한다는 대상인 “결과물에 의하여 제작되는 모든 권리 및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된 개발효과 및 권리”에는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.

5. 공동개발계약 전 피고 B의 디자인 개발 및 선사용권 주장

첨부한 판결문 16면의 4)항부터 17면까지 등록권자의 디자인 출원일 전에 해당 디자인을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입니다. 선사용권 대상인 디자인의 개발시점과 내용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보여줍니다.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8.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

영업비밀, 기술유출, 경업금지, 전직금지, 민형사소송, 다수사건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